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8. 11.

발 의 자 : 박순이 · 권기만 · 길윤옥
김상조 · 김익수 · 박광석
박교상 · 임춘구 · 장세만
전인철 · 정근수(11인)

1. 제 안 이 유

-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2. 주 요 내 용

- 보조금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9조제4항)
- 보조금 집행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 부득이 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첨부(안 제9조제5항)

3. 참 고 사 항

-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비 정산검사 및 평가) ①~③(생략) ④.....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사업비 정산검사 및 평가)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할 수 있다.

참 고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llegible]